

價值判斷의 真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金 尚 培

目	次
第一章 序一倫理學은 하나의 學으로 成立할 수 있는가?	第一節 C.L. Stevenson
第二章 倫理認識 否定論	第二節 R.M. Hare
第一節 R. Carnap	第三節 J. Dewey의 實 踐判斷論
第二節 A.J. Ayer	第四章 結
第三節 日常言語學派	I. 批判的 要約
第三章 倫理學의 懷疑의 克 服을 위한 努力	II. 맷는말
	參考文獻

第一章 序一倫理學은 하나의 學으로 成立할 수 있는가?

現代가 요구하는 새로운 倫理學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윤리학이 하나의 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 같다. 종래 윤리학이 하나의 學으로서 가능하다는 전제 밑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目的 내지 法則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로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懷疑論은 바로 이 自明하다고 믿었던 사실에로 화살을 던지는 것이다. 옛날의 윤리학자들의 관심의 유일한 대상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當爲의 문제였던 것은 인간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믿음이 심각한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러한 당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도대체 그러한 당위의 문제가 學的으로 해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순전히 이론적인 문제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실천의 學으로

哲學論究

서 인정 받던 윤리학은 오늘날 그 본래의 規範的問題를 다룰 수 있기 전에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물어야 한다.

물론 道德現象에 관한 학문이 가능함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도덕현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함에 그치는 분야는 心理學 내지 社會學의一部分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윤리학의 사명은 도덕현상을 서술함이 아니라, 있어야 할 도덕의 원리를 밝히는 일이다. 따라서 윤리학이 하나의 學으로서 성립할 수 있느냐는 물음은 도덕에 관한 叙述科學의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덕에 관한 規範의 學의 가능성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규범의 學으로서 윤리학이 가능하려면 도덕적 평가의 기준이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즉 價值判斷의 眞偽를 가릴 표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윤리학이 學으로서 가능하냐는 문제는 행위의 是非를 평가하는 발언의 옳고 그름을 밝힐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전적인 여러 윤리설들의 대부분과 현대에서의 自然主義 倫理說 및 直覺說, 形而上學의 倫理說 등은 이와 같은 도덕적 言明의 眞偽를 밝힐 수 있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답을 하는 반면 懷疑論의 대두와 관련하여 현대에 고유한 倫理認識 否定論의 발전을 보았으니 이를바 emotivism과 日常的 言語學派의 倫理說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 윤리인식 부정론의 극도의 발전은 윤리학의 學의 성립 가능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듯이 보이는 것이어서 아직까지 인생 안에 질서와 보람을 단념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우선 極端한 윤리인식 부정론의 두형태 즉 emotivism과 日常言語學派의 윤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치판단의 直偽決定 不可能性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윤리인식 부정론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었다. 따라서 다음으로 같은 계열에 속하는 윤리학일지라도 완전한 윤리학의 붕괴가 아직은 時期尚早임을认清하고 그와같은 윤리인식 부정론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일단의 학자들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本稿에서 현대 자연주의 윤리설의 입장을 취하는 J. Dewey의 理論을 고찰해 보고자하는 것은 윤리인식 부정론에 대한 그의 비판 및 실천판단론의 주장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윤리학을 세우고자 하는 현대 경험철학자들의 목표에 생

價値判斷의 眞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당한 보탬을 주어온 때문이다.

물론 가치판단을 論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윤리적 언사의 정확한 의미 분석에 관한 좀더 상세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의도하는 바는 가치판단이 어느정도는 檢證可能함을 밝혀냄으로써 윤리학이 하나의 學으로 성립할 수 있는 여지를 確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언사에 대한 충분한 고찰은 다음으로 미루고 단지 어떠한 종류의 윤리적 언사로 내려진 가치판단이전 간에 그것이 검증가능한가, 따라서 윤리학의 學的成立이 가능한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第二章 倫理認識 否定論

第一節 R. Carnap

다른 대부분의 論理的 實證主義자들과 마찬가지로 Carnap도 의미를 가진 命題들만이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 신념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도 역시 「오직 數學과 經驗科學의 명제들만이 의미를 가졌다」¹⁾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전제에서 보면 종래의 철학의 分科로 생각되어온 형이상학과 윤리학은 한꺼번에 학문으로서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다.

Carnap에 의하면, 종래 倫理學이 다루어 온 命題에는 두가지 종류의 것 이 있다. 그 하나는 도덕적 현상에 관한 叙述的 言明이요, 다른 하나는 행위나 인격에 관한 規範的 言明이다. 前者에 속하는 命題들은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혼을 어떠한 경우에도 惡이라고 본다」 또는 「친구를 배반한 자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따위의 것들이다. 이러한 말들은 결보기에는 윤리학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고유한 命題들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도무지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規範的 發言들은 아무런 경험적 사실도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 眞偽를 밝힐 도리가 없는 무의미한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흔히 그 형태가 서술적 명제와 같다고 하여 價値判斷도 역시 서술적 판단인 것으로 잘못 알아 그 眞偽를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믿어온 데에 커다란 오류가 있다. 예컨대 「살생은 惡이다」라는

1) R. Carnap, *Philosophy and Logical Syntax* Kegan Paul 1935 p. 3

哲學論究

價值判斷과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문은 실상은 똑같은 의미다. 다만 전자는 「인간은 동물이다」등의 서술적 명제와 文法的 형태에 있어 일치하는 까닭에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사실인 즉 평가적 言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쉽게 하는 문법적 형식으로 표현된 명령문에 불과하다. 그것은 어떠한 사실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증명될 수도 반증될 수도 없는 것이다.”²⁾ 평가적 言明이 때로는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 評價的言明이 참되거나 거짓된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도대체 가치판단 즉 평가적 言明이 어떤 사실도 서술하지 않는다는 그 가치판단의 真偽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어떠한 장래의 경험도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명령하는 말이 그렇듯이 모든 평가적 발언도 오직 그 발언자의 소망 또는 감정을 표명하는 記號(Symbols)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명령문에 真偽가 있을 수 없듯이 가치판단에도 真偽가 있을 수 없다. 참도 거짓도 될 수 없는 주장인 까닭에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판단이 될 수 없는 한갓 발언이며, 판단의 축에도 봇드는 것인 까닭에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第二節 A.J. Ayer

Ayer에 있어서도 “철학가는 자신을 明瞭化(Clarification)와 分析(Analysis)의 작업에 유폐시켜야 한다”³⁾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논리적 실증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학문에 사용되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分析하는 일이 철학의 임무임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윤리학자들은 소위 윤리학이라는 체계속에 네가지의 이질적인 내용물들⁴⁾을 포함시키고 그것들을 혼동하여 더욱 더 미궁에 빠져 들어갔다. 그러나 그 내용물중 윤리적 언사의 정의에 관계

2) Ibid., pp. 24-25.

3) A.J. Ayer, *Language, Truth and Logic* Dover 1946 p. 51.

4) Ibid., p. 103.

첫째 윤리적언사의 정의를 표현하거나 혹은 어떤 정의를 가능성 내지는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명제들

둘째 도덕경험의 현상들과 그것들의 원인을 기술하는 명제들

세째 도덕적미덕(moral virtue)에 대한 권유문들

네째 실제적 윤리판단들

價値判斷의 眞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되는 명제들만이 윤리학을 구성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고찰할 때 철학의 한 分科인 윤리학은 그 설 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떠한 문장이 의미를 가지고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文章에 사용된 언사의 정의에 의하여 그 眞偽를 밝힐 수 있는 非事實的 論理的 言明이어야 하는데 이론바 가치판단은 이상의 두가지 판단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성질의 것으로서 본질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때문이다.

가치판단이 의미를 지니려면 그것들은 과학적 명제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과학적이 아니라면 그것에는 의미가 없고 다만 참되다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일 따름이다.⁵⁾ 이러한 태도를 견지함에 있어서 Ayer는 主觀論과 公利主義 倫理說을 비판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공리주의자들은 행위의 옳음이나 궁극의 善을, 그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쾌락, 행복, 만족이라는 언사로 정의하고 주관론자들은 행위의 옳음이나 궁극의 善을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是認으로서 정의한다. 이러한 형태의 정의들은 각각 가치판단을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亞類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지만 한편 이러한 이론들은 윤리적 言明이 그것과 대조되는 사실적 言明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매력적이다. 그러나 「어느 행위가 옳다거나 혹은 어떤 것이 善하다」라고 일컬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是認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주관론자들의 견해는 거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어떤 행위들이 옳지 못하다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是認되는 어떤 것들이 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어떤 행위가 옳다든가 어떤 것이 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그것을 是認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거부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때로는 惡하거나 옳지 못한 것을 시인했다고 고백했다해서 모순적인 것은 역시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論點이 公利主義에도 타당하다. 어떤 행위가 옳다고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중 그 행위가 최대한의 쾌락·욕망을 충

5) Ibid., pp. 102-103.

哲學論究

족시킨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때로는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해도 모순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즐거운 것이 좋지 않다든가 어떤 나쁜 것이 욕구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은 아닌 때문에 「 X 는 善하다」라는 문장이 「 X 는 즐거움이다」 혹은 「 X 는 욕구된다」와 동일할 수 없다. 그러므로 結論的으로 「모든 가치판단들의 타당성을 행위들이 행복을 가져오는 경향에 의해서나 인간의 감성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⁶⁾을 알 수 있다.

Ayer의 비판의 화살은 절대주의자들의 견해에도 풀힌다. 절대주의자들은 가치에 대한 言明들은 일상의 경험적 명제들처럼 관찰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비로운 知的感覺에 의해서 조절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스스로 가치판단의 檢證을 불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한사람에게 直覺的으로 확실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의심스럽다거나 혹은 틀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衝하는 직관들을 조절·결정할 수 있는 規準이 주어지지 않는 한 직관에 대한 단순한 호소는 명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규준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도덕가들은 그들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옳다는 것을 ⁷⁾안다라고 말함으로써 問題를 解決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主張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것이고 가치판단의 타당성을 검증 할 수는 조금도 없다.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도덕가들은 똑같이 그들의 윤리적 견해가 옳다는 것을 알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言明에 관하여 절대주의적 혹은 직관주의적 이론들에 있어서는 검증의 方法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⁸⁾ 여하튼 “윤리적 개념들이 들어있는 판단들의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는 규준이 없는 한 윤리적 개념들은 분석 불가능하다”⁸⁾는 理論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 한편으로 “윤리적 개념들이 분석 불가능한 이유는 그것들이 단순한 僞概念(pseudo-concepts)이기 때문이다. 命題속에 들어있는 윤리적 記號들은

6) Ibid., p. 105.

7) Ibid., p. 106.

8) Ibid., p. 107.

價値判斷의 眞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그것들이 전하는 사실적 내용외에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다.⁹⁾"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에게 「너는 그 돈을 훔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너는 그 돈을 훔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외에 어떤것도 더 말할것이 없는 셈이다. 돈을 훔치는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돈을 훔친 사실에 대해 더 이상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마치 증오에 찬 목소리로 「너는 그 돈을 훔쳤다」고 말하거나 또는 어떠한 독특한 감탄부호를 덧붙여서 그 말을 썼거나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목소리 혹은 감탄부호는 그 문장의 실제적인 의미에는 아무것도 첨가시키지 못하여 다만 말하는 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表現해줄 뿐이다. 이를 일반화시켜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고찰해 보면 그 때에 그 문장은 아무런 事實的 意味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참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할 수 없는 命題를 표현하는 문장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돈을 훔치다니！」라고 하여 감탄부호의 끌이나 굵기가 특별한 不是認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眞이거나 假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한 문장을 도대체가 어떤 사람의 도덕적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것이 옳으나 그르냐하는 물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치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윤리적 언사들의 기능은 순전히 情意的(emotive)인 것이다. 그것들은 어떤 사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는 하되 그사물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는 못한다.¹⁰⁾”

이제 왜 가치판단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규준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가치판단들이 일상의 감각경험과 신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절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대체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때문이다. 만일 어떤 문장이 도무지 발언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를 묻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문장은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못함을 보아왔다. 그것들은 고통의 외침이나 명령이 겸증불가능하듯이 똑같

9) Ibid., p. 107.

10) Ibid., p. 108.

은 이유로 해서 검증불가능하다.

第三節 日常言語學派

일상언어의 철학가들도 평가적 발언과 서술적言明은 그 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치판단을 사실판단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자연주의자들의 견해를 논증할 도리가 없다고 단정하는 점에 있어서 emotivism과 같은 방향을 取한다. 그러나 「가치판단은 인식론적 견지에서 볼때 전혀 무의미하다」는 emotivist들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emotivism에 철저한 윤리학자들은 적어도 규범적인 윤리학의 가능성을 확실히 단념하였으나 일상언어의 윤리학자들은 대체로 윤리학적 탐구에 있어서의 인식적인 要素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평가적인 발언에도 條理에 맞는 것과 안맞는 것의 구별이 있는 것이어서 평가적발언에 엄밀한 의미의 논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수긍하나 평가적 발언 가운데도 인식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평가적 판단을 떠받들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유들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남의 편지를 뜯어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째서 그려 냐」고 물는다면 「書信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사회는 불안스럽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답은 하나의 사실판단이다. 이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남의 편지를 뜯어 보아서는 안된다」라는 가치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전제로서의 사실판단과 결론으로서의 가치판단 사이에 論理的 菲연성의 관계가 全無한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종의 適合性의 관계가 있음을 본 수 있다. 가치판단을 떠받들기 위하여 제시된 이유와 가치판단사이에 適合・不適合을 판가름하기에 요구되는 기준은 명확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가치판단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유를 음미함으로써 그 가치판단 속에 담긴 인식적 내지 知的要素를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사이에 일종의 적합성의 관계를 인정하여 극단한 emotivism에서 나타나는 윤리학의 붕괴를 극복하려는 일면은 있으나 그러나 일상언어의 윤리학도 역시 가치판단과 그것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유로서의 사실판단사이에 논리적 菲연성의 관계를 認定하고 있지 않

價值判斷의 真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는 점에서 倫理認識 否定論에 속한다.¹¹⁾

한편 일상언어학파의 일단에서는 가치판단의 타당성을 판가름함에 적용될 특수한 논리로서 「第三의 論理」를 생각한다. 사실에 관한 어떠한 판단들을 전제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어떤 가치에 관한 판단이 연역적으로 또는 귀납적으로 풀려 나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가치판단을 연역법이나 귀납법으로써 논증할 도리는 없다. 그러나 가치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유들 가운데는前述한 바와 같이 적합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별이 있다. 즉 條理에 맞는 이유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條理라는 것은 연역論理나 귀납논리와 같은 것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윤리학적 사고를 지배하는 특수한 논리, 이를테면 第三의 論理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Toulmin이다. 그의 주장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판단에서 가치판단이 도출되지 않는 것이나, 좀 너그러운 의미로는 그러한 추리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생명은 자기의 保存을 희구한다」라는 사실판단과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가치판단사이에는 「나팔꽃은 아침에 핀다」와 「나팔꽃을 화분에 심어서는 안된다」사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어떤 논리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인 전제에서 평가적인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Toulmin의 「評價的 推理」(evaluative inference)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제 3의 논리의 性格을 명확히 규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第三章 倫理學의 懷疑의 克服을 위한 努力

第一節 折衷的 emotivism—C.L. Stevenson을 중심으로

Stevenson은 윤리적 발언의 타당성을 밝히는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윤리적 언사의 의미에 관한 분석을 그 토대로 삼고 있다. 따라서 윤리적 언사의 의미에 관한 분석을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Stevenson에 의하

11) 金泰吉, 倫理學 博英社 1971, p. 273.

哲學論究

면 윤리적 언사에 대한 자연주의 윤리학자들의 심리학적 정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 못된다. 이러한 심리학적 價值說 즉 관심설의 근본적인 결함은 가치판단이 어떤 심리학적 사실을 서술하는데 그쳐 단지 서술적 의미만을 가졌다고 보는 점에 있다. 가치판단에 서술적 意味가 있음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러한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叙述的意味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로서 情意的 의미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윤리적 언어의 의미에 있어 두가지 뚜렷한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윤리적 발언의 서술적 의미에는 반드시 발언자의 마음가짐에 관한 정보가 즉 일반적으로 「나는 …을 시인한다」 또는 「나는 …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둘째 윤리적 발언의 情意的 의미는 어느정도 명령문의 기능과 비슷하다. 이러한 특색에 따라 윤리적 발언의 의미의 근사치로서 기초적 모형을 만들 수가 있다.¹²⁾ 그러나 「나는 …을 시인(또는 비난) 한다」식으로 표현되는 기초적 모형은 정의의 代理로서 제구실을 하기에는 너무나 거칠다. 따라서 좀더 가까운 근사치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 보충적인 분석이 첨가되어야 한다. 첫째 윤리적 언사의 정의적 의미의 특색을 보다 정확히 밝혀야 하며 둘째 그 서술적 의미를 보다 넓은 각도에서 고찰해야 한다. 윤리적 발언의 서술적 의미 가운데는 발언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정보외에도 몇 가지 성질 내지 관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 성질내지 관계가 무엇인가를 異論의 여지없이 한정할 수는 없다. 언어의 變通性 내지 애매성으로 말미암아 같은 개념도 여러가지로 定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약 어떤 사상가가 오직 자기의 定義만이 침된 정의라고 고집한다면 그는 說得定義를 내리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윤리적 언사의 의미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하여 Stevenson은 가치판단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 도덕문제에 있어 두사람의 의견이 對立되는

12) C.L. Stevenson, *Ethics and Language* New Haven 1944, p. 21.

1. "This is wrong" means I disapprove of this; do so as well.
2. "He ought to do this" means I disapprove of his leaving this undone; do so as well.
3. "This is good" means I approve of this; do so as well.

價值判斷의 眞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경우에 확연히 구별되는 두가지가 있다. 所見(beliefs)의 불일치와 態度(attitudes)의 불일치가 곧 그것이다. 소견의 불일치라 함은 있는 사실에 관한 견해의 대립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을 밝히려는 경우의 대립을 일컫는 것이요, 태도의 불일치라 함은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대하는 평가적 태도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를 말한다.¹³⁾ 이처럼 도덕문제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두가지 대립을 포함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특수성에 유래하는 것이다. 즉 도덕적 문제가 표명하는 바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 어떻다는 所見의 표명이요, 또하나는 판단되는 사물에 대한 판단자의 주관적 태도의 표명이다. 예컨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문제는 첫째, 「약속을 어기면 신용을 잃는다」「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다」「우리의 양심은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한다」등의 사실에 관한 소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둘째, 약속의 이행을 소망하며 약속의 위반을 미워하는 태도 즉 사물에 대한 판단자의 태도를 표명한다.

가치판단의 대립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가지 대립 즉 소견의 대립과 태도의 대립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 두대립을 해소시키는 方法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사실에 관한 소견을 고쳐줌으로써 태도의 대립을 해소시킬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태도의 대립이 소견의 대립에서 유래되었을 때에 한하여 더욱이나 어떤 태도와 어떤 소견과의 관계는 논리적이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것인 까닭에 그러한 방법은 성공이 보증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학설對立의 해결책이 윤리적 논쟁에는 타당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좋다」라는 가치판단을 대체로 「나는 이것을 시인한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기초적 모형 3 註 12참조)로 분석해 볼때 서술적 부분은 일반적인 심리학적 문제이므로 그 眞偽를 과학의 방법으로 가릴 수 있으나 명령적 부분은 이를 반증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결국 윤리적 발언을 엄밀하게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13) Ibid., pp. 2-3. cf. Stevenson, *Facts and Value* Oxford pp. 1-3.

哲學論究

그러나 윤리학에 있어서의 증명의 대리구실을 할 무엇이 있을 법한 일이 다. 사실 명령문에 있어서도 또한 윤리적 言明에 있어서도 어떤 반박에 부딪쳤을 경우에는 비록 증명은 못될지라도 자기의 주장을 변호할 어떤 이유나 논의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윤리問題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정당화의 논변은 대충 네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⁴⁾

첫째부류의 論辯은 소견의 대립을 해결할 때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다. 여기서만은 “윤리적 판단을 옹호내지 공격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이유들의 그판단에 대한 관계는 논리적이 아니라 심리적이라는 原則에 대하여 예외적이다.”¹⁵⁾ 예컨대 A: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나쁜일이다. B: 너는 생각이 모자란다. 네가 하등의 不是認을 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부류의 논변은 문제된 대상의 성질 또는 그것이 일으킨 결과를 지적함으로써 상대편의 태도와 그의 윤리적 판단을 고치고자하는 성질의 것이다.¹⁶⁾ 즉

A: 정부는 특히 약품의 판매에 좀 더 강력한 제약을 가해야 마땅하다.

B: 그것은 기업의 자유를 훼손할지 모른다.

A: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변은 사회적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결정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세째부류에 속하는 論辯은 대체로 둘째의 것과 비슷하나 설명이 간접적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¹⁷⁾ 예를 들면

A: 투표를 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B: 아니다, 내 투표는 최종結果에 하등의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A: 너는 아마 모든 다른 사람들도 너와 같은 식일 것을 원치 않은걸!

14) Ibid., pp. 115-129.

15) Ibid., pp. 115-118.

16) Ibid., pp. 118-121.

17) Ibid., pp. 121-127.

價值判斷의 真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둘째논변도 그렇거니와 세째논변 역시 지지하는 이유와 지지받는 판단사이의 관계는 논리적이라기 보다는 심리적이다. 따라서 주어진 지지이유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경험적 사실의 문제요, 순수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네째부류는 논쟁자의 한사람이 논쟁의 촛점을 바꿈으로써 상대방의 논박을 잠시 피하려는 경우다. 예컨대

A: 너는 네 점음을 게을리 낭비하고 있다.

B: 당신도 절었을때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소

A: 실은 그랬지. 그러나 내 불운한 경력이 네게 교훈이 되지 않겠니.

지금까지의 고찰은 나와 남파의 의견 대립에 관해서였다. 그러나 나자신 속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사정은 근본에 있어 다를바 없다. 다만 **對內的** 갈등의 경우는 지성적 추리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를 뿐이다. 이 개인적 決意에는 지성적 요소 즉 인식적 일면이 특히 강하다.¹⁸⁾

그러나 윤리학적 방법에 포함된 지성적내지 인식적 요소를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윤리학에 있어 합리적 방법이 발휘할 수 있는 **決定的 判決力**에는 심각한 제한이 없지 않다. 윤리적 판단과 그것을 옹호하는 이유사이의 관계는 논리적인 필연의 그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실의 그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해결해 줄 논리적 필연성을 가진 합리적 방법이 마련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윤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없다함은 어찌한 사정아래서도 윤리학의 방법이 결정적 판결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하나의 전제만 참으로 판명된다면 합리적 방법으로 언제나 윤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란 “모든 태도의 대립은 소견의 대립에서 유래한다”¹⁹⁾는 그것이다. 물론 이 전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18) C.L. Stevenson, “The Emotive Conception of Ethics and its Cognitive Implication” Sellars & Hospers ed. Readings in Ethical theory.

19) Stevenson, op. cit., p. 136.

哲學論究

려나 윤리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법의 결정적 판결력에 대한 假言判斷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약에 윤리적 논쟁이 소견의 대립에 근거를 두었다면 그 소견의 대립이 해결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추리와 탐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²⁰⁾ 그리고 또한 윤리학에 있어서의 합리적 방법에는 결정적 판결력이 없더라도 대립하는 논객들이 의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비합리적 방법이 그것이다. 비합리적 방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persuasion)이다. 설득을 피하는 논객들은 상대편의 소견을 변경시킴으로써가 아니다. 언어가 감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상대편의 태도를 바꾸고자 한다. 물론 설득의 방법도 합리적 방법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당히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득은 타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지금까지의 고찰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Stevenson의 분석적 서술이었다. 그러면 Stevenson은 윤리학적 방법들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의 방법론의 중심은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방법을 위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방법의 정당성에 관한 그의 기본적 문제는 어떠한 종류의 방법이 정당성을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내지 평가적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에 관하여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문제삼을 수 있느냐는 그것이다. Stevenson은 가치판단의 眞偽 결정에 있어 윤리적 論辯이 첫째, 형식윤리학에 호소하는 경우 및 둘째, 가치판단을 밀바침하기 위하여 제시된 경험적 이유의 眞偽를 따지는 사실적 탐구에 종사할 경우에 있어서라면 당연히 그 논변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방법은 윤리학에 있어 고유한 것은 아니다. 그의 견지에서 볼때 특히 윤리학에서 고유한 방법 가운데 비합리적 방법, 즉 설득적 방법을 들수 있겠다. 그러나 설득에 있어 「정당한」혹은 「부당한」이라는 말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쓰지 않는 한 인식적으로 무의미하다.²¹⁾ 그리고 보면 윤리적 논변 가운데서 그 정당성을 제대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실적인 전제로

20) Ibid., p. 138.

21) Ibid., p. 152.

價值判斷의 眞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부터 평가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특수한 과정에 있어서 뿐이다. 즉 모든 관심은 사실적 이유들로부터 평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리의 과정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느냐는 문제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에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그것은 廣意的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명석해야 할 철학의 견지로는 삼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Stevenson의 소신이어서 결국 부정적 결론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윤리적 방법에 관하여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을 수 없다함은 시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윤리적 방법 가운데서 하나를 指해야 할 경우 선택할 이유가 될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로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의 구별은 비록 없을지 모르나, 방법의 선택은 그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條理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 우리가 마땅히 택해야 할 방법이냐는 논쟁은 반드시 태도의 불일치를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옳으냐는 문제는 그 자체 規範倫理學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방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윤리학적 논변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참된 방법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언제나 결정적 판결력을 가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논변은 사실적 전제에서 평가적 결론으로 넘어가는 추리및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설득의 방법을 포함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타당성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할 수는 없는 때문이다.

第二節 R.M. Hare

가치판단에 관한 Hare의 입장은 극단한 두가지 견해 즉 자연주의 윤리설과 emotivism을 각각 물리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종합적내지 절충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자연주의자들이 규정적 언어와 비규정적 언어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규정적 발언의 의미를 사실판단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고 하는 한편 emotivist들은 그 두가지 언어의 공통점을 무시하여 가치판단등은 단순히 발언자의 감정내지 소망을 표현하는 기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are에 있어서는 이 두가지 극단적인 형태의 윤리설은 받아 들

哲學論究

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명령적 발언과 叙實的 발언(indicative utterance)에는 서로 공통된 일면과 서로 다른 일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을 닫아라」는 명령과 「너는 지금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는 言明을 비교해볼 때 저 명령과 이 叙實은 모두 「네가 지금 문을 닫으려함」이라는 동일한 사태내지 화제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前자는 화제의 사태가 현실화하기를 부탁하는 발언이요, 후자는 그사태가 현실적임을 긍정하는 발언인 점에서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즉 「문을 닫아라」라는 명령문은 「네가 이제 곧 문을 닫으려함, 부탁한다(please)」의 의미요, 「네가 지금 문을 닫으려하고 있다」라는 叙實的 발언은 「네가 이제 곧 문을 닫으려함, 그렇다(yes)」의 의미이다.²²⁾ 여기서 Hare는 새로운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두 발언의 의미중 공통된 부분을 프래스틱(phrasitic), 상이한 부분을 뉴우스틱(neustic)으로 부르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명령적 발언과 서실적 발언의 차이는 프래스틱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뉴우스틱에 주의를 기울여야 찾아낼 수 있다. 그 두 발언은 프래스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 그 하나는 서실적 발언에 현실적 의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발언이 있듯이 명령적 발언에도 그러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이요 다른 하나는 서실적 발언에 논리적 모순을 품은 것과 품지 않은 것이 있듯이 명령적 발언에도 그러한 구별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絕對者는 25時에 식사한다」와 「絕對者는 25時에 식사를 시켜라」와 같은 발언은 현실적 의미가 없기에 다같이 무의미한 발언이며, 「높이가 2m는 안되고 5m는 넘는 책상을 만들어라」와 같은 발언은 자체내의 이미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발언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을 무시하고 있는 emotivism은 받아들이기에 마땅치 않은 것이며, 명령문이나 가치판단등의 規定的 발언에도 지적내지 논리적 시비의 여지는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성의 유무는 윤리학적 인식의 가능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뜻으로 무의미하지도 않고 논리의 모순도 포함하지 않으며, 실천이 불가능하지도 않은 명령들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러한 제한들은 단지 규정적 발언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22) R.M. Hare, *The Language of Morals* Oxford 1967, pp. 17-18.

價值判斷의 真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들이며 충분한 條件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충분한 조건은 무엇이며, 그 충분한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Hare에 의하면 명령적 발언의 추리에 관하여는 두개의 기본명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는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로부터 명령적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²³⁾는 것이며 둘째는 어떠한 판단도 그것이 무엇인가 명령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한 가치판단이 아니다²⁴⁾라는 것이다. 첫째 명제는 전제에 없는 것을 결론 속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일반 논리학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그리고 둘째 명제는 가치판단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상식이다. 가치판단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답하는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전제 가운데 명령적인 요소가 전혀 없으면 명령적 결론을 얻을 수 없으며 명령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발언은 도덕적 판단이 될 수 없다는 두 가지 필연적 귀결은 사실판단만으로서는 그 사실판단이 아무리 여럿이고 또 정확하더라도 주어진 도덕판단의 충분한 타당근거가 될 수 없다는 기본적 명제이다. 「양심을 속이면 피차가 불행해진다」는 사실판단으로부터 「양심을 속이지 말라」라는 도덕판단이 추론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피차가 불행해지지 않으려면」이라는 假言的 條件을 전제로 삼을 경우에만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내지 도덕판단을 정당화하는 문제는 바로 저 假言的 조건을 어떻게 정당화 하느냐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예의 가연적 조건은 「만인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전제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전제는 또 다른 보다 더 큰 전제에 의해 정당화될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또 하나의 정당화를 기다리는 기본 대전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경험적인 사실판단을 근거로 삼고 이 마지막 대전제, 즉 일반적으로 도덕원리라고 생각하는 대전제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연주의적 윤리학자들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대전제를 직각적으로 알

23) Ibid., p. 28.

24) Ibid., p. 31.

哲學論究

수 있다고 한 것이 직각론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두 윤리설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Hare 역시 그 이론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성내지 지성의 사업으로서의 윤리학은 절망적 위협속에서 설 자리를 잊고 마는 것이 아닌가? emotivism에 철저한 학자들은 적어도 규범적인 윤리학의 가능성은 확실히 단념하였으나 그러나 일상언어의 윤리학자들은 대체로 윤리학적 탐구에 있어서의 인식적인 요소를 어느정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前章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즉 Toulmin이 그렇듯이 일상언어학파에 속하는 윤리학자들 중에는 윤리학적 추리에 적용되는 제 3의 논리라는 것을 제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Hare는 이 제 3의 논리의 성립을 긍정하지 않는다. 명령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전제들로부터 「어떻게 할까」라는 실천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리 너그러운 의미의 추론으로도 불가능하다.²⁵⁾ Toulmin이 대표하는 제 3 논리의 학설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세가지 이유²⁶⁾에서인데 그중에서도 이 학설이 저지른 가장 중대한 오류는 “행위에 관한 추론을 고찰함에 있어서 도덕의 본질에 속하는 因子를 간과했다는 사실”에 있다.²⁷⁾ 그 본질적인 인자라는 것은 決斷(decision)이다. 행위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는 도덕의 원리는 어떤 자명한 권위와 더불어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추리된 것도 아니다. 어떠한 도덕원리를 선택하는 것은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인 것이다. 이러한 결단은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닥치는 대로 내려질 수는 없다. 여러가지 사정과 그 사정속에서 취해질 행위가 빚어낼 결과가 충분히 고려된 끝에야 비로소 그러한 결단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결단의 근거를 논하는 것은 결단의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엄밀한 의미의 윤리적 인식을 단념한 Hare가 그런대로 윤리적 사고속에 지성적 요소를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熟考에 입각한 결단의 산물이 곧 도덕원리인 까닭

25) Ibid., p. 46.

26) Ibid., pp. 46-55 참조

27) Ibid., p. 54.

價値判斷의 眞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에 도덕원리의 타당성 여부의 문제는 관계한 熟考와 결단의 타당성의 문제에로 귀착할 것이다. 결단의 토대가 된 숙고는 그 결단의 이유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현사태와 장차 생길 결과에 관한 사실판단들로써 구성되므로 그 眞偽는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 검증의 결과 숙고한 바에 거짓된 판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해서 그것만으로 그 숙고를 토대로 삼는 결단내지 도덕원리의 타당성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판단들은 그 자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치판단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어떤 결단의 타당근거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결단의 결과와 그 결단이 지지하는 원리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동시에 그 원리를 일반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얻은 결과에 까지 언급해야 한다.²⁸⁾ 한결음 더 나아가 그러한 결과들과 원리들의 중요성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결국 그때에는 인생의 마지막 결단은 각자스스로가 내리는 것이며 이 마지막 결단을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떠받들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없다고 답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결단으로 선택된 인생의 마지막 원리가 엄밀한 증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마지막 원리를 조리없는 것이니 아무렇게나 탁치는 대로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결단이 의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려진 결단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근거있는 결단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²⁹⁾

第三節 J.Dewey의 實踐·判斷論

Dewey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윤리학의 문제는 「도덕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룰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대상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유무를 알아내야 한다. Moore는 價値에 객관적 실재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Perry는 관심의 유무와 대소가 가치의 유무와 대소를 결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가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가치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도 또한

28) Ibid., pp. 68-69.

29) Ibid., p. 69.

哲學論究

관심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가치의 근원은 오직 평가, 즉 가치판단일 뿐이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가치판단이 사실판단과 같은 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가치문제의 연구도 자연과학이나 다름없이 學으로서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Dewey의 문제는 가치판단도 사실판단과 동일한 논리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 우선 논파되어야 할 두개의 주장이 있다. 즉 그것은 “첫째 평가내지 가치판단은 본래 진정한 판단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및 둘째, 평가도 일종의 판단이기는 하나 그것은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연과학이 다루는 사실판단과는 논리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³⁰⁾는 주장이다.

첫번째 주장은 emotivist들의 그것이다. 가치판단에 대한 emotivism의 견해는 이미 고찰해온 바 있다. 즉 그들에 의하면 「×는 좋다」 혹은 「×는 나쁘다」 등의 발언은 일반적인 사실판단과 다름없는 문법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오류를 범하는 수가 많은데, 그 의미로 본다면 전혀 판단의 범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성질의 것이다. 판단이란 본래 어떤 사실의 통지를 목적으로 삼는 것인데, 소위 가치판단이라는 것은 아무런 사실도 알려주는 바가 없다. 그것은 오직 발언자의 감정을 표시하거나 듣는 이의 감정을 표시하거나 유발시키는 구실을 할 뿐이다. 그것은 일종의 부르짖음 또는 명령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의 판단이 아니다.³¹⁾

Dewey는 이와같은 가치판단이 일종의 부르짖음 또는 명령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emotivism의 主張을 부인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부르짖음이나 몸짓 따위는 故意的인 것일 때에는 “무엇인가 통지하며 따라서 命題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³²⁾이어서 역시 판단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을 경우 그 외마디 소리는 「누군가가 내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30) 金泰吉, 倫理學 p. 208.

31) 本稿 第二章 一, 二節 參照

32) J. Dewey, *Theory of Valuation* Chicago, 1938, p. 11.

價值判斷의 眞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동시에 「누가 빨리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예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에 그 외마디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신호로써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까닭에 명제와 비등한 일종의 언어인 것이다. 가치판단은 외마디 부르짖음과 같은 성질을 지녔다는 emotivist들의 견해는 옳을지 모르나, 그 외마디 자체는 이미 판단내지 명제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이 아무런 사실적 내용을 전해주지 못하므로 판단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잘못이다. 가치판단 즉 평가도 일종의 판단인 것이다.

다음으로 논파해야 할 것은 「평가도 일종의 판단이기는 하나 그것은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연과학이 다루는 사실판단과는 논리적 성격이 다르다」는 견해이다. 즉 과학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판단의 眞偽는 경험적 방법 곧 관찰내지 실험을 통하여 밝힐 수 있으나 윤리학이 대상으로 삼는 가치판단은 眞偽를 밝힐 도리가 없다는 주장을 논파해야 한다.

후상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치판단의 眞偽를 밝힐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어진 가치판단을 구체적인 문맥안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논증하는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평가적 발언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동시에 장차 일어날 事態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전달과 예언의 眞偽는 경험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인 까닭에 평가적 발언도 구체적인 문맥 안에서 해석된다면 그 眞偽는 경험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가치판단이 전달하고 예언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ewey는 實踐판단(practical-judgeme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것의 논리적 특색을 분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실천판단이란 행동이 요구하는 사태에 관한 판단”³³⁾ 즉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판단을 일컫는다. 실천판단의 특색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중요한

33) J. Dewey, "The Logic of Practice", The Journal of Philosophy XII(1915) p. 505. 金泰吉, 倫理學 p. 210에서 轉載

哲學論究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첫째 실천판단의 주제가 되는 사태는 불완전한 사태 즉 문제를 품은 상황이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이 부족을 채워줄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실천판단은 미래에 관련된 판단이다.³⁴⁾ 둘째 실천판단에 있어서는 그 판단자체가 그 상황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데 영향을 주는 因子의 하나다. 다시 말하면 그 실천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 판단의 주제가 된 상황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졌다.³⁵⁾ 이로써 미완성의 상황에 관한 판단, 즉 미래에 대한 판단가운데도 실천적이 아닌 것이 있음이 분명하다. 세째 실천판단은 판단된 상황속에 혼존하는 사태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 상황의 부족함을 채우려면 어떤 방법이 좋으리라는 것을 예언한다.³⁶⁾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는 실천판단은 「몸이 나쁘다」는 현재의 사태를 알려주는 동시에 「의사에게 보이면 나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색에 비추어 실천판단의 眞偽를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천판단에 포함된 현사태의 파악과 상황의 인식을 위한 예언의 적중 여부가 그 실천판단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한 적중 여부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인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등의 실천판단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위가 결정된다하여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들과 같은 가치판단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가 문제다. 물론 가치판단도 부족한 상황을 메꾸기 위하여 행동을 요구하는 판단이므로 실천판단이기는 하지만 「병이 나오려면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등과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假言판단과 동일할 수 있는가? 수단에 관한 판단의 진위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으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판단은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인 것이다. 그러나 Dewey에 의하면 목적이란 주관의 산물이어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궁극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의 구별은 오직 상대적일 뿐이다. 따라서 본래적인 선과 수단적인 선의

34) Ibid., p. 506.

35) Ibid., p. 506.

36) Ibid., pp. 509-510.

價值判斷의 真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구별도 상대적이 아닐 수 없다. 목적 그 자체로 여겨지던 가치판단도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실천판단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과학적으로 그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第四章 結

I. 批判的 要約

emotivism은 평가적 발언에 情意的 意味라고 불리우는 색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가치판단의 특수성을 밝힘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사실 종래의 학자들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사이의 논리적 성격의 차 이를 간과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윤리학적 탐구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평가적인 발언에는 정의적인 의미만이 있고 서술적 의미는 전혀 없다는 emotivism의 주장은 편협한 견해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도덕문제에 대한 대립은 단지 기호내지 감정의 대립을 의미할 뿐이라는 결론이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확실히 사실에 관한 판단의 대립 즉 所見의 대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적 발언은 전혀 판단이 아니라는 주장도 역시 지나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도덕문제에 관한 대립에 소견의 대립이 포함되어 있다함은 도덕적 발언에 서술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함이요, 서술적 의미를 포함하는 한 도덕적 발언도 일종의 판단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Dewey의 현대윤리학적인 시도는 상당한 공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는 善惡의 구별이 단순히 감정이나 욕구에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작용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因子임을 밝힘으로써 도덕문제의 지성적 처리를 위한 길을 남겨놓은 것이다. 과학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공통점을 강조한 그의 주장은 비록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깊은 암시를 품고 있다. 그러나 Dewey의 윤리설의 난점은 도덕적 발언에 대한 그의 해석에 관한 것들 속에 들어 있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발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豫言의인 그것이었고 그밖에 약간의 서술적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언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 그

두 가지 의미가 곧 Dewey가 도덕적 발언에 인정하는 의미의 전부다. 예언적 의미를 강조하는 Dewey의 견해에 깊은 통찰력이 깃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덕적 발언에 관한 Dewey의 분석은 결코 빈틈이 없는 것은 못된다.

이점에 관하여 Stevenson은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i) Dewey는 도덕적 발언이 가진 정의적 의미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없었다. ii) 도덕적 판단은 언제나 예언적인 것은 아니다. iii) 도덕적 발언이 어떤 예언을 포함할 경우일지라도 그 예언의 내용은 그리 분명치 않은 까닭에 그 발언의 檢證(verification)을 위한 기준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iv) 언어로서는 똑같은 도덕적 발언이 그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내용의 예언을 내포할 수가 있다.³⁷⁾

Stevenson은 일반적으로 emotivism에 속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학설속에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세가지 학설 즉 心理學的 價值說 및 극단한 emotivism, 직각론자들의 견해들의 장점이 고루 반영되어 있다. Stevenson의 공적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그가 윤리적 발언에 서술적 의미와 정의적 의미가 아울러 들어왔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윤리적 발언의 서술적 의미는 속으로 숨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동일한 말이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윤리적 발언을 전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事理에 맞지 않는다고 Stevenson은 주장한다. 윤리적 발언의 의미의 분석에 관련하여 Stevenson이 이룩한 또 하나의 업적은 소견의 대립과 태도의 대립의 구별이다. 물론 소견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탕을 달리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심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자못 의심스러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Stevenson의 구별은 가치판단의 의미분석을 위해서나 윤리학적 방법론의 탐구를 위해서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각이다. 한편 설득 정의에 관한 Stevenson의 개념은 規範的인 문제들을 위해 아무런 쇠극적 해결책도 마련해 주지는 못한다. 설득정의의 개념이 암시하는 것은 결국 윤리적 언어의 절대적인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결론이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도리어 윤리학의 용기를 꺾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

37) Stevenson, *Ethics and Language* pp. 256-264.

價值判斷의 真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개념이 윤리학적 정의라는 논란많은 문제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일면에 빛을 던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설득정의의 개념은 윤리학에 있어서의 규범적 문제들로 해결에로 접근하는 조심성 있는 탐구를 위하여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방법론적 탐구로 눈을 돌려 볼 때 Stevenson의 견해는 매우 뛰어남을 볼 수 있다. 윤리학적 방법에 관한 서술로서 보면 Stevenson의 연구는 매우 치밀해서 도덕적 논쟁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類型의 論辯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合理的方法과 非合理的方法을 나눈 구별 및 前者の 능력의 한계성에 관한 思考는 많은 示唆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방법론적 고찰에도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첫째 소견의 대립과 태도의 대립은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방법론적 고찰의 기본가정은 그리 확고하지가 못하다. Stevenson의 방법론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부조리한 설득의 방법도 대립을 제거하는 효과만 거둔다면 容認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다.

가치판단에도 서술판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논리와 규칙이 지배한다는 사실은 Hare의 프레스틱 및 뉴우스틱의 두개념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되었다. 그리고 도덕적 원리의 타당성의 문제 즉 가치판단을 정당화내지 논증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Hare는 몇몇 통찰력있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첫째로 그는 이 방법론의 문제의 성질을 잘 분석해냈다. 이 문제의 난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밝혀낸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에 관한 Hare의 고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의 개념을 도덕원리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드러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Hare는 가치판단의 타당성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주체적인 결단을 정당화하는 문제에로 귀착함을 밝혔다. 그 결단은 아무렇게나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 결단에도 지적인 요소가 있고, 충분한 근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Hare의 이점에 관한 고찰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그가 말하는 지적요소 및 충분한 근거의 성질이 좀 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결단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좀 더 끝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II. 맷는 말

과학적 정신의 대두를 계기로 윤리학은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왔다. 도덕의 절대적 권위를 세우기에 힘을 기울이자면 모호한 형이상학이나 독단 섞인 직각설의 토대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편 경험적 근거를 요구하는 과학적 정신에 충실하고자 하면 윤리학 자체의 성립을 스스로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기 일쑤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세례를 거친 현대인의 기질은 증거의 제시를 봐야 비로서 납득할 수 있는 까닭에 증거를 토대로 삼지 않는 형이상학이나 직각설은 으례히 배척을 받아왔고 驗證과 論理的 分析에 스스로를 유폐시킴으로써 급기야는 윤리학의 學的成立을 위협하는 국면에까지 도달하였다. 물론 Hare의 말과같이 현대의 논리학적 탐구의 첫째 결과로서 일부의 철학자들이 理性的 活動으로서의 윤리학을 단념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는 인생 안에 질서와 보람을 단념하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윤리학에 대한 전적인 단념이 아직 時期尚早임을 밝히고 싶은 것이다.³⁸⁾ 이를 위하여 가치판단의 검증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 더이다.

가치판단이 검증가능하다는 것은 윤리학의 명체도 역시 자연과학의 그것과 논리적으로 비슷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윤리학도 하나의 學으로서의 成立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 때문이다.

參考文獻

金泰吉：倫理學 博英社 1971

Ayer A.J.: *Language, Truth and Logic* Dover 1946

Carnap R.: *Philosophy and Logical Syntax* Kegan Paul 1935

Hare R.M.: *The Language of Morals.* Oxford 1952

Dewey J.: *Theory of Valuation* Chicago 1938 "The Logic of Judgements

38) Hare, *The Language of Morals*, p. 45.

價值判斷의 真偽決定 可能性에 對한 考察

of Practice" The journal of philosophy XII(1915)

Stevenson C.L.: *Ethics and Language* New Haven 1944, *Facts and Value*
Oxford, "The Emotive Meaning of Ethical Terms," "The Emotive
Conception of Ethics and its Cognitive Implication" Sellars & Hospers
ed. Readings in Ethical Theory New York 1952